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20131 집행문부여의 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신대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외 1인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나11546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

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33조는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사물관할 역시 직분관할의 일종으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45조에 관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20. 7. 2.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20. 9.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에서 2020카합2033호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받아 2020. 9. 29.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4. 1. 10.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위 간접강제결정에 관하여 63,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구하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단독판사는 2024. 10.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2025. 11. 20.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이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하고 제1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